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기업의 관리방안(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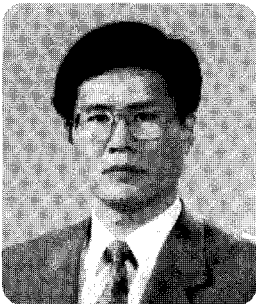
- 국제보호동향과 분쟁사례 -

〈전호에 이어 계속〉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의 규정방법으로는 예컨대 독일의 경우²⁸⁾와 같이 일반조항에 의한 규정방법과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이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개별·열거하는 규정방법이 있다. 이 중 일반조항에 의한 규정은 다양한 침해행위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확립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바 그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금지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자칫 영업비밀에 대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6개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동법상의 6가지 침해행위유형은 가목의 竊盜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 탐지형)와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 누설형)를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하고 이 두가지 기본유



윤 선 회
〈상지대 법학과 교수〉

목 차

1. 서(영업비밀의 보호와 입법배경)
2. 외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3.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4. 영업비밀의 의의
5. 영업비밀의 유형
6. 영업비밀의 요건
7. 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유형
8.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9. 영업비밀의 관리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28)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서는 "업무상 거래에 있어서 경쟁의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의 구제청구가 가능하다"고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형에 따른 사후적 관여행위 두 가지를 각각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자가 부정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득당시에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나목과 마목에 규정하고, 부정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를 취득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알게 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다목과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부정취득행위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어 금지청구등의 대상이 된다(부정경쟁방지법 § 2(iii) 가목).

②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된다(부정경쟁방지법 § 2(iii) 나목). 본목의 예로서는 ①일본의 大日本印刷産業 스파이사가건이 있는데, 위 인쇄회사의 조업원 甲이 회사의 록커(locker)內 및 임원의 책상서랍 속에 있던 기밀서류를 입수하고, 종업원 乙은 다른 기밀서류를 同社 소유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여 각각 社外로 가지고 나가서 기업조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교부

한 사건29), ②자사의 의약품 개발 및 그 제조승인 취득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예방위생연구소의 技官과 공모하여 同연구소내의 그 上司가 사용하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他社의 신약 데이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자사에 가져가서 복사를 한 다음 그 자료를 7-16시간 내에 원래의 캐비닛에 반환한 사건30), ③백화점의 컴퓨터 기술자가 근무처의 전산실에서 고객명부를 입력한 磁氣테이프를 훔쳐내 외부의 명부판매업자에게 매각한 사건31) 등이 있다.

③ 사후적 관여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부정경쟁방지법 § 2(iii) 다목). 본목도 나목과 같이 가목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再轉得을 한 자에 대한 규정이나, 사후적으로 악의로 된 자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나목과 구별된다. 즉 본목의 규정은 당해 영업비밀의 취득시에는 선의·무중과실이었으나 취득후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후적 악의자에 대하여 당해 영업비밀의 사용등을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것이다.

본목의 행위는 가목·나목과 달리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영업비밀의 사용과 開示만이므로 취득행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기업체의 종업원, 영업상 거래관계자, 영

29) 大日本印刷事件, 전게서, 14면 참조
30) 신약데이터형사사건, 判例時報 1126號 3면(東京地判 1964. 6. 15) 참조
31) 京王百貨店 事件, 判例時報 1250號 144면(東京地判 昭和42. 9. 30) 참조

영업비밀실시권자 등과 같이 계약관계 내지 신뢰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후 부정한 돈을 받거나 상 위직에 오를 목적 등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본문의 행위이다.

취득당시에는 부정취득의 개입 여부에 관하여 선의, 무중과실이었던 자가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 경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금지청구의 訴狀送達을 받게 되면 사후적 악의자가 된다. 그리고 보유자등으로부터 경고나 소장의 송달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간의 주의로 부정취득이 개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후적 중과실이 인정된다.³²⁾

※선의자의 보호

④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위반행위)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2(iii) 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2(iii) 마목).

⑥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2(iii) 바목).

8.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주종을 이루어 구제의 실효를 거두기도 어려웠다. 즉 계약관계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계약관계가 없을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으며, 형사적으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사용된 수단 자체가 형사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

32) 정호열, 전거서, 271~272면

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0), 손해배상 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1)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2)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기업체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18 (i)·(iii), §19)

(1) 민사적 구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유형을 명시하여, 동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민사적인 구제의 특칙으로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0①),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0② 전단),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에 대한 제거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0② 후단),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1),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해 정당한 보유자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12)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의 침해는 내부자에 의한 침해, 외부자에 의한 침해, 내부자와 외부자와의 공모에 의한 침해, 라이선스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침해, 下請에 의한 침해 등 그 행위 유형이 다양각색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중 내부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訴訟에 의한 해결방법과 仲裁(調停)에 의한 해결방법 및 對話에 의한 해결방법 등이 있다. 이 중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공개 원칙에 의해 소송과정 중에서 비밀이 공개되므로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즉 영업비밀은 용어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비밀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한다. 한편 현행 헌법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94조제5호에서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판제도하에서 재판을 통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보장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9. 영업비밀의 관리

A 영업비밀의 관리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단지 비밀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영업비밀을 어느 정도 관리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된다고 한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³³⁾, 비밀의 종류, 관리방법, 영업비밀의

명확화, 자료열람의 제한, 영업비밀의 취급자 제한 등의 관리 규정을 작성해 두어, 부정 내지 이상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B. 영업비밀의 관리방법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그 영업비밀의 내용·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특정인이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 수구체적인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관리방법의 적절한 운용과 함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영업비밀의 명확화

영업비밀의 명확화란, 관리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밀문서나 플로피 디스크 등에 「極秘」, 「秘」, 「對外秘」, 「社內秘」, 「部內秘」,

「課外秘」 등의 빨간 스탬프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찍는다거나 혹은 딱지를 붙여야 한다.

또 開示할 때에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의 취급자 한정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특정인에 한하여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다시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등급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극비는 회사의 간부 중 중역이상, 「秘」, 「對外秘」, 「社內秘」는 임원 이상, 「部內秘」는 담당부장, 「課外秘」는 담당과장 등으로 등급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3) 영업비밀 취급자에 대한 秘守義務의 명확화

사내규칙 등으로 영업비밀 관리자와 액세스할 자에게 비밀보지의무를 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임원은 정당한 개시범위 이외의 영업비밀을 개시 또는 누설하지 못한다. 만약 해당 영업비밀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사

33) 영업비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다음의 3가지, 즉 기업정보의 절취를 방지하고, 비밀누설행위를 규제하고, 비밀관리규정(사규)을 수립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널리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먼저 기업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대상과 기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근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영업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대상은 제조방법, 제조공정, 연구보고서, 설계도면, 고객명부, 회사의 중요 소송서류, 판매계획, 광고선전계획, 등 모든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이며,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근원은 종업원(특히 퇴직종업원), 제품판매자, 원료공급자나 하청업자, 식품광고, 고객과 기업내방객, 기술계약자, 기업을 감독하는 정부기관 등이다.

이 규정(사규)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하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첫째로, 강제성보다는 종업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규정 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둘째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취급자를 엄격히 제한한다. 즉, 특정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할 때에는 그 취급자를 정하고 이에 접근가능한 자의 범위를 정해둔다.

셋째로, 정보자체의 제작성과 파기시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보가 무한정으로 보호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로, 정보의 외부 공개시에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사용이 허가된 정보의 내용, 기간 등을 명시함은 물론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사용계약 이후의 정보관리 조건과 중간점검, 비밀유지의무 위반시의 배상규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에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또 퇴직자에게도 동등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영업비밀 취급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규정은 물론 서약서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입사시 서약서, 상품개발담당부서, 배속시의 서약서, 신규 공동개발에 참가시의 서약서, 퇴직한 종업원의 轉職處로의 통지문, 새로 취임한 임원에 대한 서약서 등이 있을 수 있다.

4) 영업비밀의 보관방법 규정

영업비밀의 보관방법으로는 비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部 및 課 등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 보관하면서 외부자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회사에 출입하는 사람의 체크, 영업비밀을 접하는 자 한사람 한사람씩 기록부에 사인하게 한다.

여기서 특정한 곳이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록커, 캐비닛, 금고, 영업비밀을 두는 방, 또는 은행의 대여금고 등을 들 수 있다.

5) 영업비밀의 開示·사용제한

영업비밀을 사외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可否를 사전에 얻은 다음에 開示하여야 한다. 또 마스크이나 학술지에 발표·취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을 작성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보지의무의 서약서와 내부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영업비밀의 복사제한

영업비밀의 원본을 집중관리하고, 불필요한 복사를 방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복사된 매수와 사용처를 관리책임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7) 퇴직자에 대한 비밀보지의무

퇴직자에게 퇴직시까지 점유하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업원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비밀보지의무를 넣어 재직시는 물론 퇴직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의 비밀보지의무를 넣어 서약서에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전직할 경우는 퇴직자와 경쟁업체에 대해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퇴직자가 전에 근무한 회사에 대한 비밀보지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8)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비밀보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업금지의무를 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합리적인 범위를 넘으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계되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경업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범위란 일반적으로 제한의 기간, 장소적 범위, 제한대상 직종의 범위, 대상의 유무 등으로 볼 수 있다.

9) 영업비밀의 유형별 관리

영업비밀의 관리는 업종과 기능에 따라 각각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면형태의 비밀은 문서, 도면, 설계도, 데이터·리스트, 고객명부 등으로 관리하고, 전자기록물 형태의 비밀은 플로피·디스크, cartridge 테이프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조직·기구분야 : 기업조직 변경계획, 합병계획 등
- 재무관리분야 : 신규설비투자계획, 기업 예산액 배분 등
- 인사관리분야 : 인사이동, 직원배분계획 등
- 생산관리 분야 :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 공정과정 등 생산기술자료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보고서, 실험자료, 신이론, 신기술 등 연구비밀
 - 생산계획
 - 생산원가, 원료의 종류와 구입처, 구입가격
 - 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취급방법, 조작, 제품모형
 - 신제품 판매 발표시까지 제품의 모형, 모델 등
- 판매관리분야 : ·제품 또는 기술의 판매계획
 - 고객명부, 거래처의 명부 등 제품판매관련 자료
 - 고객, 거래처 신용조사에 관한 자료 등
- 기타 분야 : 회사경영정책의 결정 및 변경사항, 기업의 중장기 경영계획 등 성장발전사항 등

10) 기술개발부서 핵심요원의 특별관리³⁴⁾

영업비밀은 기술개발부서에 종사하는 경력직 사원(핵심요원)이 경쟁기업에 부당 스카웃 되면서 누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핵심요원이 경쟁기업에 부당 스카웃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로, 영업비밀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직종에

있는 핵심종업원의 임금수준 및 후생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영업비밀의 누설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을 분산하여 특정 종업원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셋째로, 영업비밀 누설이 퇴직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여타 종업원을 모니터링하여 차후의 누설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1) 인터넷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불법과기와 유출가능성 차단³⁵⁾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전통적 개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이들 정보는 전자우편(E-mail)이나 인터넷(Internet) 등을 통해 순간적으로 전세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정보를 관리하는 상급자는 컴퓨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용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컴퓨터에 저장된 기업정보의 관리를 위해서는 비밀번호에 접근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즉 패스워드를 통해 터미널의 사용자를 제한하고, 컴퓨터 사용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퇴직종업원의 Internet Card(ID)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컴퓨터에 의해서는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기업정보를 완벽하게 비밀로 유지

34), 35) 한국발명진흥회 「연구개발요원과정」, 240면~250면 인용.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된 기업정보는 누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컴퓨터에 내장된 기업정보는 취급자의 실수나 시스템 자체의 에러에 의해 항상 파괴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백업파일(Back-up File)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2) 관리방법의 서면화

종업원에 대해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기본방침으로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금지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근거한 관리 내용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하거나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관리규정을 총괄적인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부 규정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직원의 교육

영업비밀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영업비밀 보호

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원, 사원 등의 관계자에 대해서 의식환기를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4) 라이선스계약

라이선스 계약할 당시는 영업비밀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해당 영업비밀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秘密保持義務를 履行할 것과 계약기간 종료후 使用禁止, 계약종료후 관련 자료의 반환의무 및 秘守義務를 明示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옵션 (Option)계약 등이 필요하다.

15) 下請契約

하청계약을 체결할 때도 라이선스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그 영업비밀의 내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특정인이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 구체적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관리방법의 적절한 운용과 함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특9808**

안 발명 관련 도서 **내**

도 서 명	출 판 사	가 격
이제 I 이론도 만들때다(I=I, Idea, Invention)	한국발명진흥회	5,500
역사를 바꾼 세계적인 발명·발견	〃	5,500
작은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한 세계적인 발명가들	〃	5,000